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2024년 제1차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해결 역량강화 지원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 02. 28.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개요

사업목적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지정기업
지원규모	13개사 내외(기업지원금 최대 2억원 이내)
지원분야	일반형, 구매확약형, 혁신성장형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7.(수), 17:00까지
접수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7.(수), 17: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www.jblc.or.kr)

□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구매확약형	혁신성장형
개요	기술고도화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 및 제품·성능 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관계사 등으로부터 구매주문서 등을 받은 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	혁신형 기술개발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차과제 지원
지원금액 (과제당)	1.5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1.5억원/년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협약일로부터 1년 + 1년(2년)

□ 지원방식

구분	내용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분야별 한가지 분야 선택 ○ 지정기간 5년간 최대 3회 지원
사업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담금(현금+현물)은 총 사업비 20%이상 - 현금비율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지급(이행보증 증권 必) - 사업비 통장은 0원 통장으로 관리
기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의 10%(현금 일시납 원칙) * 기술개발 과제 최종평가 "성공"으로 판정 시 기업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 내 기술료 완납 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분할납부 시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컨소시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단, 본 과제를 주관하는 선도기업과 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 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소재를 제한하지 않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연구소, 특화센터, 대학 등 연구기관 ※ 단, 도외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신청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지정기업 43개사

연 번	기업명	연 번	기업명
1	(주)대왕페이퍼	23	(주)미보기아
2	(주)진흥주물	24	부성테크(주)
3	(주)엄지식품	25	(주)위델소재
4	(주)인익스	26	(주)팜조아농업회사법인
5	(주)하이엘	27	(주)씨앤씨어패럴
6	(주)한국선진철도시스템	28	(주)카이테크
7	(주)네오크레마	29	(주)그레넥스
8	(주)디에스엔피	30	(유)와이케이
9	케이넷(주)	31	(주)미래클
10	(유)금란산업개발	32	(주)다스
11	(주)코아스	33	(주)이엔플러스
12	(주)피엘티	34	신한방직(주)
13	(주)코빅스	35	(주)와이에이치에스앤티
14	(주)골드밴	36	농업회사법인(유)휴먼에노스
15	(주)디딤돌	37	(주)셀로닉스
16	지음소프트	38	(주)핀컨퍼니
17	도가테크	39	(주)나노솔루션
18	디와이이노베이트(주) (3회 지원 완료)	40	(유)태성이앤씨
19	(주)함소아제약	41	(주)팔복인더스트리
20	나라바이오(주)	42	(주)피앤엘세미
21	(주)신호테크	43	(유)동방이노베이션
22	(주)우성이앤에스	44	(주)세일특수강

□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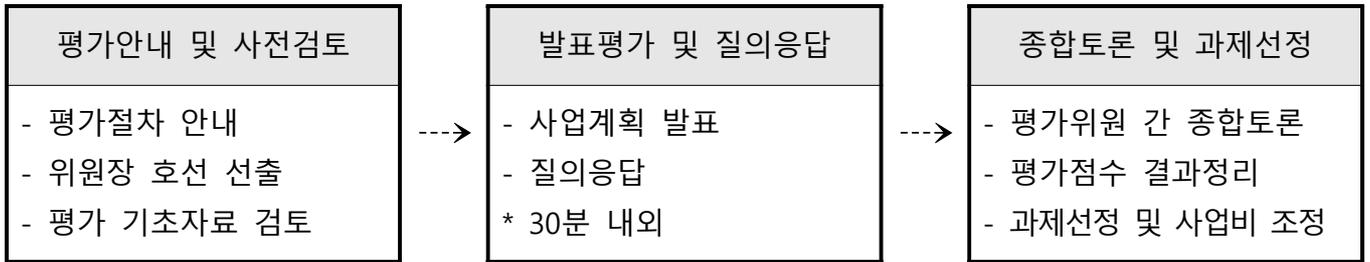
구분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기간인 경우	NTIS 제재조치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사업 참여 및 중복지원금 금지 약속서
○ 지정기간 5년간 기술개발 과제 3회 수행한 기업	내부검토

4

추진일정

	추진절차	주관
사업신청	참여기업 모집공고	JBLC 홈페이지
	사업신청(www.jbhc.or.kr)	기업 → JBLC 홈페이지
선정평가	서류검토(신청요건 확인 등)	전북TP
	참여기업 선정평가(발표평가) ▼	전북TP(외부전문가)
협약 및 기업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선정통보	전북TP(외부전문가)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선정기업 → 전북TP
	협약체결 ▼	전북TP ↔ 선정기업
	기업부담금 입금	선정기업 → 사업비통장
	기업지원비(도비) 입금 ▼	전북TP → 선정기업
	과제수행	선정기업별 과제 수행
중간점검(과제기간에 따라 생략가능) ▼		전북TP(전문가) → 선정기업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접수	선정기업 → 전북TP
	최종현장실태조사 ▼	전북TP(전문가) → 선정기업
	결과평가(발표평가) ▼	전북TP(외부전문가)
	사업비 잔액 반납처리 및 기술료 징수 등 ▼	선정기업 → 전북TP

- **평가방식:** 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진행방법:** 신청기업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내용(발표자료-PPT)을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기준 점수 6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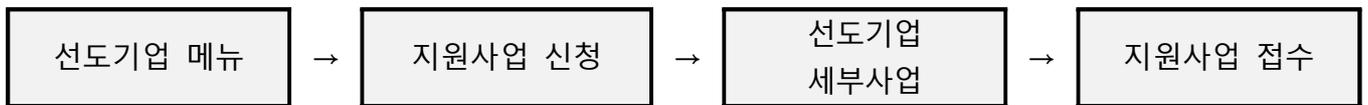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배점(점)	세부내용
사업추진 역량	사업의 필요성	10	-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	10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목표의 명확성	추진내용의 적정성	10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	- 사업범위 및 목표의 명확성 등
	추진 내용의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 상의 추진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
추진방법의 적정성	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	10	- 추진전략, 연구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등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 사업추진 내용과 부합하는 기간 설정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정 및 사업비 집행 항목의 적절성
파급효과	매출 및 이익 가능성	1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 성장성 등
	사업의 파급효과	10	- 고용창출 기술적, 사회적 기여도 등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7.(수), 17:00까지
- 접수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7.(수),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처: www.jblc.or.kr(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
 - 세부사업 신청방법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한글파일로 제출(**.hwp)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참고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 금지 약속서	양식참고

7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전산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접수 불가
- 기업지원금은 전체 예산규모, 기대효과, 기업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누락하는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 (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불성실 제출 시 차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홍보 지원 결과물에 아래 문구 삽입요망

전북특별자치도

본 (시제품, 시작품, 결과물 등)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음. (제작일자: 2024년 00월 00일)

JBTP
(재)전북테크노파크

8

문의 및 상담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팀
유형식 연구원(063-219-2137 / tpsik@jbtp.or.kr)